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04
----------	------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1일 김용연 의원(찬성12명)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연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무리한 일상을 보내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
- 노인이 겪는 신체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의 공간으로 기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격리형 시설이 아닌 야외 운동시설의 조성이 필요함.

- 근력운동에 집중된 공원 일반 체육시설과 구분하여 노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움직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전용운동기구가 설치된 노인놀이터 조성이 필요함.
- 노인 건강증진 및 친목 도모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인이 즐길 수 있는 노인놀이터의 설치와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노인놀이터 설치를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노인놀이터 설치에 있어 노인복지시설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 및 놀이터 이용의 접근성과 편리성 증진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이 겪는 신체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를 위하여 노인 전용운동기구가 설치된 노인놀이터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본 조례안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노인놀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안 제7조제1항제 4호의2 신설)
- 노인놀이터 설치에 있어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 및 놀이터 이용의 접근성과 편리성 증진을 감안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7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7조(건강증진)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p><신 설></p> <p>5. ~ 8. (생 략)</p> <p><신 설></p>	<p>4의2. 노인놀이터의 설치</p> <p>5. ~ 8.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4의2에 따른 노인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인이 노인놀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

나.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 현황

- 현재 서울시 관광체육국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주요 내용			
○ 현장 지도 활동			
- 횟수/장소 : 1일 3회(회당 최소 40분) 이상 / 1일 2개소 이상 방문 지도			
구 분	장 소	지도대상	배치현황
일반지도자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자치센터, 공공스포츠클럽, 중·고등학교 등	전 연령	179명
어르신지도자	경로당,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만 65세 이상	159명
유소년지도자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아동시설 등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	6명
- 추진절차 : 시·군·구체육회 세부계획 수립·운영			
체육회 홍보, 수요자 문의		체육회 상담 (수업조정)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전개 (찾아가는 서비스)	

○ **(서울시 시범운영) 공원 헬스장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 활동**

- 횟수 : 1일 2회(회당 최소 40분) 이상/ 주 2회 / 2개소 이상 공원 헬스장 방문 지도
 - ※ '21년 시범운영으로 자치구체육회별 2개월씩 운영 (예, 5·6월 또는 9·10월 등)
- 장소 : 근력강화를 위한 헬스기구가 5종 이상 설치된 공원으로서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 후 최종 장소 선정
- 추진절차 : 자치구체육회 세부계획 수립·운영

구체육회-자치구 협의



시민 홍보
(현수막 등 게시)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전개
(공원헬스장 현장 체육지도 서비스)

- 복지정책실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심신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복지정책실 소관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주요 사업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 시설현황 : 총 36개소(시립 19, 구립 16, 법인 1)
- 대상/인원 : 만 60세 이상, 등록 652,337명(개소당 1일 평균 1,300여명 이용)
- 주요사업 : 평생교육, 취미여가, 고용(일자리사업등) 기능회복, 사회참여지원(자원봉사) 등

○ **경로당 운영지원**

-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 경로당 3,483개소
- 주요내용 :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 및 개방형 경로당 운영
 - ※ 개방형 경로당 :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732개소)

○ **노인대학 운영지원**

- 지원대상 : 25개소 노인대학 ※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지회) 산하
- 사업내용 : 노인대학별 맞춤형 강좌 운영(인문학, 컴퓨터, 판소리, 고전무용, 서예 등)
- 지원내역 :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운용, 강사비·학습재료비 지원 등
- '21년 추진실적 : 101개 강좌 운영, 수강생 2,518명(남 376명, 여 2,142명)

다. 검토의견

- 노인의 행복한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심신 건강 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노인복지시설, 야외 운동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노인 맞춤형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본 조례안에서 노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인전용 운동기구가 설치된 노인놀이터를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공원 및 산책로 등에 다양한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운동기구 대부분이 전 연령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전용 운동기구의 별도로 설치 필요성.
 - 노인놀이터를 조성하고 노인전용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세대통합 관점에서도 특정세대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조성·운영하는 것의 타당성.

라.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야외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고령 어르신의 신체적·정서적 기능 유지를 위한 체육 시설 확대 필요성 공감하나,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공원, 놀이터 등의

부지에 설치되는 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자치구 관련부서(노인관련 부서, 공원조성과 등)와 협의하여 공간확보 및 운영방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이 겪는 신체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를 위하여 노인 전용운동기구가 설치된 노인놀이터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 노인의 행복한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심신 건강 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공원 및 산책로 등에 다양한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운동기구 대부분이 전 연령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전용 운동기구가 설치된 노인놀이터를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전용공간 확보, 세대통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효율적인 노인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 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 내용

- “노인놀이터의 설치”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삭제)
-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수정)

VI. 토론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604
----------	-------------

제안연월일 : 2021년 9월 6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효율적인 노인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놀이터의 설치”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삭제)
- 나.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수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노인놀이터의 설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의2에 따른 노인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인이 노인놀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을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 8. (생략)</p> <p><u><신설></u></p>	<p>제7조(건강증진)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노인놀이터의 설치</u></p> <p>5. ~ 8.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u>제4의2에 따른 노인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인이 노인놀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제7조(건강증진)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삭제></u></p> <p>5. ~ 8.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u>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건강증진)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설></u></p>	<p>제7조(건강증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